

등록번호	보건환경처-3737	부장(직무대행)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등록일자	2017.11.14.	이기준	최영도	조진환	김석태	11/14 김태호
결재일자	2017.11.14.	협조 기술본부 본부장 최정균 승무본부 본부장 정일봉 차량본부 본부장 한재현 고객서비스본부 본부장 김병선 경영지원실 실장 김성완				
공개구분	비공개					
방침번호	사장-514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기업
 글로벌 No.1 서울교통공사

『현업별 안전관리자 선임에 의한』

산업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2017. 10.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기업
글로벌 No.1 서울교통공사

『현업별 안전관리자 선임에 의한』

산업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2017. 10.



서울교통공사
보건환경처

「현업별 안전관리자 선임에 의한」 산업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현업기관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체계 강화로 **【사고·재해예방 등 산업안전 관리에 만전】** 을 기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 보건환경처-316호('17.6.19)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안]
- 고용노동부 방문 및 질의 결과 [방문 3회, 질의 1회]
- 노동조합 간 협의 ['17.8.24~9.26, 5회]

II 연 혁

■ 구 서울메트로

구 분	구의역 사고 이전
안전보건 관리(총괄)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 안전관리처장 • 현업 : 36개 부서장
안 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 2명 • 현업 : 36명

➔
**관리책임자
상향 조정**
(부서장→
본부장)

사고 이후('17.3.15)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지원본부 : 본부장 • 고객사업본부 : 본부장 • 운영본부 : 본부장 • 기술본부 : 본부장 	본부장의 안전책임과 역할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지원본부 : 2명 • 고객사업본부 : 3명 • 운영본부 : 7명 • 기술본부 : 5명 	안전담당자 36명 운영 (현업)

■ 구 서울도시철도공사

구 분	종합진단 이전('16.7월)
안전보건 관리(총괄)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 안전총괄실장 • 현업 : 44개 부서장
안 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 1명 • 현업 : 44명

➔
**관리책임자
변경 지정**
(부서장→
본부장)

개선계획 명령('16.9.9)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 	개선계획 제출 ('17.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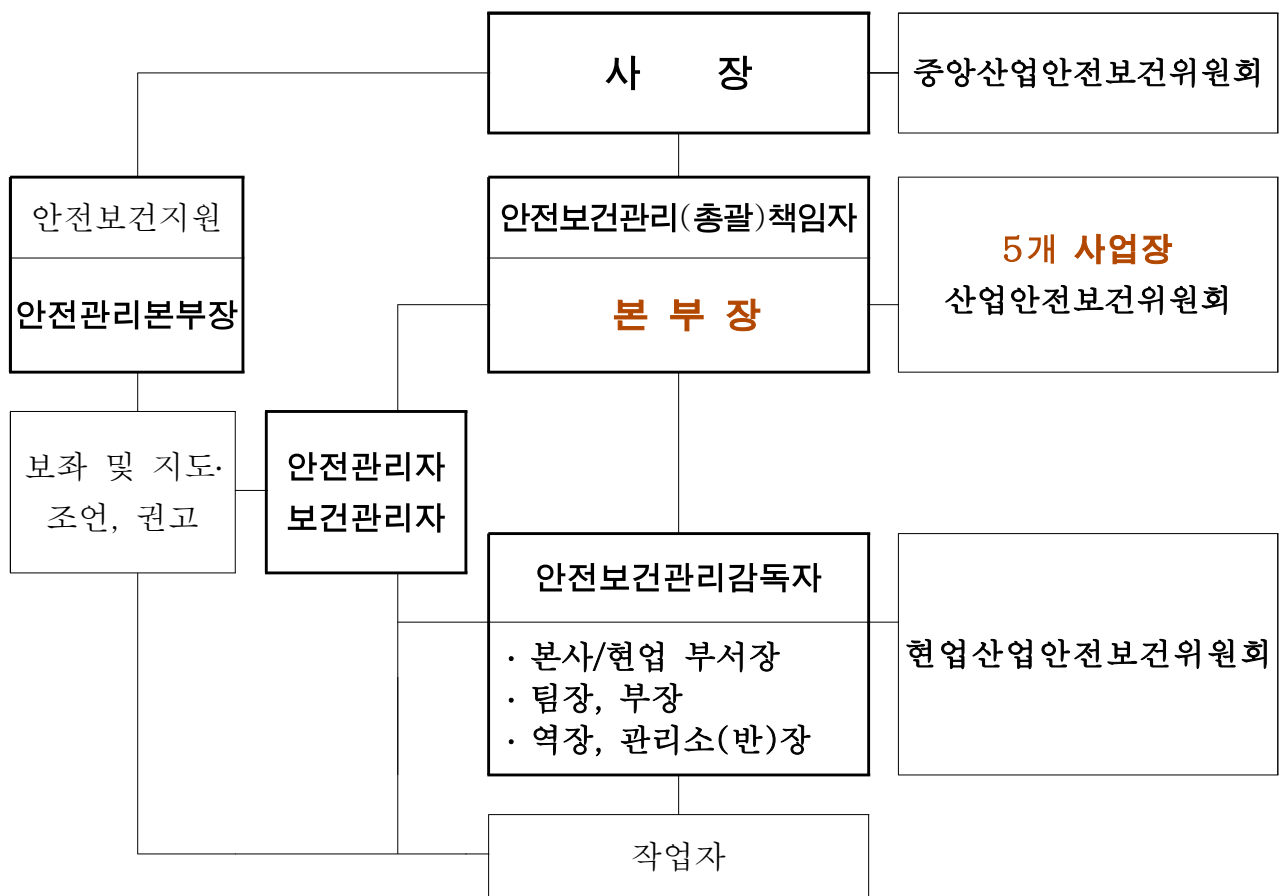
□ 개선계획 제출내용(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17.1.25)

'17.5월 양 공사 통합예정으로 새로운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따라 보건 및 안전관리자를 동일하게 선임·운영(노사 및 양 공사 합의)
 * 통합 시 서울메트로가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방안('16.11.3)으로 운영하기로 결정

■ 서울교통공사 : 통합 안전보건관리규정 반영('17.5.31)

구 분	운 영 방 안	비 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5개 사업장 : 경영지원실장, 고객센터, 차량, 승무, 기술본부장	
안전관리자	• 본부별 2~3명 이상(11명)	

□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 본사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III 검토배경

■ 통합 후 관리책임자 보좌,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안전관리자 규모 감소**

□ 안전관리자 운영 : 통합전 62명 → 통합 후 11명

* 전담(18명 → 11명)

○ 통합 후 본부별사업장 운영, 통합정원 미반영 등 제반사항과 법적요건 고려, 총11명(본부별 2~3명) 선임·운영

☞ **안전관리체계 약화 인식(외부시각)**

■ 안전담당자 대체운영은 **안전관리 기준 미달**

□ 현업기관은 안전관리자 운영이 적합(고용노동부 의견)

○ “구 서울메트로가 현업 안전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대체하여 안전담당자를 운영하였으나 공사 현업특성 감안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의(방문) 결과 반영

일 자	방문기관	면담자	내 용	비 고
'17.7.10	서울동부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실질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적 구성요건을 감안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현업 기관별로 지정하는 것 이 바람직	방문
7.17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담당자	장소적 개념 (현업기관을 별개의 사업장 간주)	질의
8.04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현재 5개 사업장 지정과는 별도로 현업 기관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방문
8.22	서울동부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과장 근로감독관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업에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방문

IV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안)

- ◆ 현업기관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72명)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고(예방) 등 산업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관리책임자 보좌, 현업기관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본사(부) 및 현업기관별 안전관리자로 운영하는 **【투트랙 체계】** 로 강화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운영(안)

□ 관리체계 강화 전 · 후

구 분		현 재	강 화(안)	비 고
계		• 11명(전담)	• 83명(↑72)	전담12,겸직71
사 업 장	본사	• 2명	• 2명	-
	고객본부	• 2명	• 29명(↑27)	현업 27기관
	차량본부	• 2명	• 13명(↑11)	11기관
	승무본부	• 2명	• 17명(↑15)	15기관
	기술본부	• 3명	• 22명(↑19)	19기관

➔
72명
추가 선임
 (전담1, 겸직71)

□ 소속별 안전관리자 선임(안)

구 분	계(전담)	본사	고객본부	차량본부	승무본부	기술본부
계 (전담)	83명 (12명)	2명 (2명)	29명 (2명)	13명 (3명)	17명 (2명)	22명 (3명)
사업장	11명(9명)	(2명)	(2명)	2명	(2명)	(3명)
현업기관	72명(3명)	-	27명	11명(3명)	15명	19명

- 본부별(사업장) 여건(근무양태, 현업기관 집합·산재 여부 등)을 고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책임자 보좌(현정원 내 운영)

-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50명 이상~1,000명 미만은 1명 이상, 1,000명 이상은 2명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항 별표3]

■ 기타사항

-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후 필요 시 운영체계 개선안 추가 검토
- 안전관리자 직무수당(월 3만원)은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붙임 1. 현업기관별 인원현황 1부.
2. 안전관리자 등 선임 자격 및 업무 1부.

붙임 1

현업기관별 인원현황

연번	본부별	소 속	현원	상시	연번	본부별	소 속	현원	상시
1	고객 서비스 27개 2,705명 (상시)	서비스안전지원사업소	51	51	39	승무 15개 2,354명 (상시)	동대문승무사업소	332	245
2		종로서비스안전센터	189	122	40		신답승무사업소	215	161
3		충정로서비스안전센터	189	117	41		신정승무사업소	294	217
4		동대문서비스안전센터	188	118	42		대림승무사업소	288	222
5		종합운동장서비스안전센터	202	126	43		지축승무사업소	301	226
6		신대방서비스안전센터	196	125	44		수서승무사업소	270	201
7		당산서비스안전센터	165	107	45		상계승무사업소	296	223
8		경북궁서비스안전센터	176	115	46		동작승무사업소	254	197
9		옥수서비스안전센터	188	117	47		답십리승무사업소	193	110
10		도곡서비스안전센터	189	118	48		영등포승무사업소	198	114
11		상계서비스안전센터	176	113	49		수색승무사업소	115	68
12		한성대서비스안전센터	177	114	50		신내승무사업소	118	66
13		동작서비스안전센터	211	135	51		대공원승무사업소	198	113
14		화곡서비스안전센터	153	93	52		신풍승무사업소	201	114
15		광화문서비스안전센터	193	124	53		잠실승무사업소	128	77
16		군자서비스안전센터	165	108	54	기술 19개 3,395명 (상시)	전기1사업소	451	310
17		강동서비스안전센터	144	92	55		전기2사업소	414	263
18		성산서비스안전센터	171	107	56		정보통신1사업소	214	150
19		동묘서비스안전센터	148	92	57		정보통신2사업소	250	163
20		석계서비스안전센터	89	57	58		궤도1사업소	353	229
21		태릉서비스안전센터	121	77	59		궤도2사업소	38	33
22		대공원서비스안전센터	141	92	60		신호1사업소	473	290
23		이수서비스안전센터	166	106	61		신호2사업소	425	250
24		보라매서비스안전센터	147	91	62		기계1사업소	164	121
25		부천서비스안전센터	101	63	63		기계2사업소	182	124
26		잠실서비스안전센터	106	69	64		전자1사업소	148	98
27		모란서비스안전센터	91	56	65		전자2사업소	244	164
28	차량 11개 2,611명 (상시)	군자차량사업소	578	446	66		토목1사업소	125	101
29		신정차량사업소	520	408	67		토목2사업소	314	206
30		지축차량사업소	606	528	68	건축1사업소	134	103	
31		수서차량사업소	235	167	69	건축2사업소	120	107	
32		창동차량사업소	333	228	70	승강장안전물관리단	443	389	
33		방화차량사업소	136	97	71	승강기관리단	96	86	
34		고덕차량사업소	267	225	72	장비관리단	294	208	
35		신내차량사업소	142	99					
36		도봉차량사업소	281	239					
37		천왕차량사업소	143	101					
38		모란차량사업소	100	73					

■ 안전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⑥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관리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2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안전관리자의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는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9.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7호 또는 제32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10.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에 따라 채용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